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2508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6068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250824 판결

전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송희근

변 론 종 결 2021. 4. 13.

판 결 선 고 2021.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1. 20. 체결된 양도계약은 76,500,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대한민국(소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별지 목록 채권에 관한 위 양도계약 취소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대위변제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신용보증 의뢰에 따라 B의 연대보증 아래에 2019. 4. 26.경 소외 회사와 보증원금 99,875,000원, 보증기한 2020. 4. 24.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9. 4. 30. 소외 은행으로부터 117,5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9. 10. 30. 원금 연체를 사유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가 2020. 1. 28. 소외 은행에 보증원금 99,875,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1,260,637원 합계 101,135,637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나. B의 아파트 매각 및 매매대금 내지 보증금반환 채권의 양도

(1) B는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무렵인 2019. 10. 19. E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F 외 1필지 지상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64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매잔금을 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11. 11.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해 주면서 아직 받지 아니한 매매잔금 17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고 월 차임 570,000원으로 정하여 2020. 2. 11.까지 임차인으로 거주하기로 하였다.

(2) 그리고 B는 2019. 11. 20. 배우자인 피고에게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매매잔금 겸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E으로부터 17,000,000원을 받자 2020. 1. 7.경 E에게 위 170,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153,000,000원 채권 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고(이하 위 채권 양도를 '이 사건 채권 양도'라 한다), 2020. 1. 30.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E으로부터 다시 52,125,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위 153,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추가 지급된 52,125,000원을 공제한 100,875,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20. 2. 26.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 이에 E은 2020. 7. 1. 이 법원 2020년 금 제2506호로 피공탁자를 B 또는 피고로 하여 99,875,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B와 피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1) 피고는 1996년 B와 혼인하였는데 2019. 10. 25.경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약정을 하였다(아래 내용 중 '갑'은 B, '을'은 피고이다).

가. 갑 명의 이 사건 아파트는 갑과 을이 혼인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임을 확인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처분시 갑은 을에게 재산분할로 매매대금 중 2억 2천만 원을 을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다. 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파트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그 가 수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며 그 권리는 갑이 가진다.

라. 갑은 을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2019. 11. 30. I과 사이에 이 판결상 피고 주소지 기재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57,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2,000,000원은 피고가 직접, 나머지 23,000,000원은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입회한 공인중개사인 J이 I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2020. 1. 28.

K으로부터 20,000,000원, 같은 날부터 2020. 1. 29.까지 사이에 B의 여동생인 L으로부터 105,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1. 30. M은행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자금을 모아 2020. 1. 30. I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232,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이하 'N아파트'라 한다)에 전입 신고하였다.

(3) 피고는 2020. 2. 10. B와의 협의이혼을 신고하여 이혼하였다.

라. B의 자력

(1)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무렵 B가 소유하였던 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밖에 없었다.

(2) B는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날인 2019. 11. 12. 기준으로 대출 내지 현금서비스 합계 49,701,000원 상당의 채무와 합계 294,141,000원의 보증채무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O동 주민센터, 서초구청 OK민원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 양도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재산분할이므로, 그 과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 양도 중 2분의 1 부분인 76,500,000원(153,000,000원 × 1/2)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 양도는 76,5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대한민국(소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 양도 취소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B는 153,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피고에게는 N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57,000,000원의 채권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즉,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피고와 B 부부의 재산분할 자산의 가액은 410,000,000원이다.

나.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B가 경영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조달한 것이므로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과 관련된 채무로서 재산분할할 때 고려되어야 할 소극재산이다.

다. 그런데, B는 당시 유일한 재산인 위 채권을 모두 피고에게 재산분할하였고 소극재산은 분할하지 않았다. 이 사건 채권 양도로 B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은 전부 없어졌다.

라. B와 피고의 결혼생활은 25년인데 지금에 와서야 이혼할 만한 뚜렷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 양도 중 76,500,000원의 부분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부분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 주장과 같이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양도가, 그 시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드는 여러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B는 153,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피고에게는 N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57,000,000원을 각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주장하는데,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이 사건 채권 양도가 있었던 2019. 11. 20.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인 2020. 1. 30. 비로소 성립한 것이다. 협의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기준시는 협의이혼 신고시이고 이 사건의 경우 그때가 2020. 2. 10.이므로 그 무렵이 존재하였던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조달 출처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유의 재산으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원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B가 경영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조달한 것이므로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과 관련된 채무로서 재산분할할 때 고려되어야 할 소극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그밖에 B와 피고의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는,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모두 피고에게 재산분할하였고 그에 따라 B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은 전부 없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 양도는 B와 피고의 공동재산이라 할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분배한 것인데, 그 매매대금이 640,000,000원이었던 점, 그 중 153,000,000원만을 피고에게 채권 양도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B와 피고가 이혼 과정에서 피고가 적극재산 전부를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분할하는 협의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5) 재산분할이 과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분할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지 재산분할 이후에도 어느 일방이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결과의 측면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 일방이 채무 초과인 이유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소극재산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6) 달리 이 사건 채권 양도 중 76,500,000원의 부분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릴 만한 다른 자료의 제출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

별지

목 록

1. 매매대금 잔금채권

소외 []가 소외 []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 외
1 필지 [] 아파트 []호 부동산에 대한 2019. 10. 19.자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잔금채권.

